

대련경기규정

[제정 1999.03.27]

개정 1999.06.05.

개정 2002.01.01.

개정 2005.03.12.

개정 2008.07.10.

개정 2012.01.07.

개정 2013.01.26.

개정 2014.02.15.

개정 2015.02.14.

개정 2016.05.07.

개정 2017.01.14.

개정 2018.01.13.

개정 2018.03.25.

개정 2019.01.12.

개정 2020.01.11.



사단법인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련경기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와 산하회원 단체 및 소속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대련경기규정으로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2019.01.12)

【해설】

협회의 모든 대련경기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기는 합기도 경기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대련경기에 적용하며, 협회의 승인을 받은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단체 또는 협회가 후원하는 대회의 규정으로 적용한다. (개정2013.01.26)

제3조 경기장

경기장은 넓이가 10m×10m의 정방형으로 해야 하고, 바닥은 장애물 없이 수평을 이루는 탄력성 있는 매트로 한다. 단, 경기장의 가로, 세로 길이를 2m 이내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이때는 선수의 안전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기장 구분

- 1) 10m×10m넓이의 경기장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중앙부 8m×8m넓이의 정방형지역을 실효지역이라 하며, 경기지역의 끝선인 장외선 으로부터 사방 1m 내부를 가효지역이라 한다.
- 2) 실효지역과 가효지역은 바닥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구분한다. 단, 같은 색상 일 경우 5cm이상의 백색 또는 황색선 으로 구분한다.
- 3) 실효지역과 가효지역의 구분선을 실효선이라 하고 경기장 끝선을 장외선이라 한다.

- 4) 경기장넓이를 8m×8m로 축소하여 사용 할 경우 중앙부 6m×6m 넓이의 정방형지역을 실효지역이라 하며, 경기지역의 끝선인 장외선 으로부터 사방 1m 내부를 가효지역이라 한다. 실효지역과 가효지역구분등은 2,3항과 동일 하다. (개정2016.5.07)

2. 위치표시

1) 주심의 위치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배심원석을 향해 서서 뒤편으로 1.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2) 부심의 위치

장외선이 달은 각 모서리에서 경기장 중심을 향해 뒤편으로 1m 떨어진 곳에 정한다. 단, 경기가 개시되면 좌·우 이동하며 선수를 주시해야 한다.

3) 배심원석의 위치

배심원석은 주심의 앞면에 그은 장외선 에서 3m 떨어진 곳의 중앙에 정한다. 기록원은 배심원의 우측에 계시원은 좌측에 위치한다.

4) 선수의 위치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배심원석을 향해 좌우 1m 떨어진 곳에 정한다. 배심원석(정면)을 향해 주심의 우측을 청, 좌측을 홍으로 한다. 경기개시와 종료 시 선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폭 10cm와 길이 50cm의 청색·홍색테이프를 경기장내 중앙에서 각각1m씩의 거리에 표시한다. (개정2019.01.12)

5) 지도자(코치)의 위치

각 선수를 향하여 장외선 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정하며 경기위원장이 대회 규모와 환경에 따라 지도자(코치)석의 유무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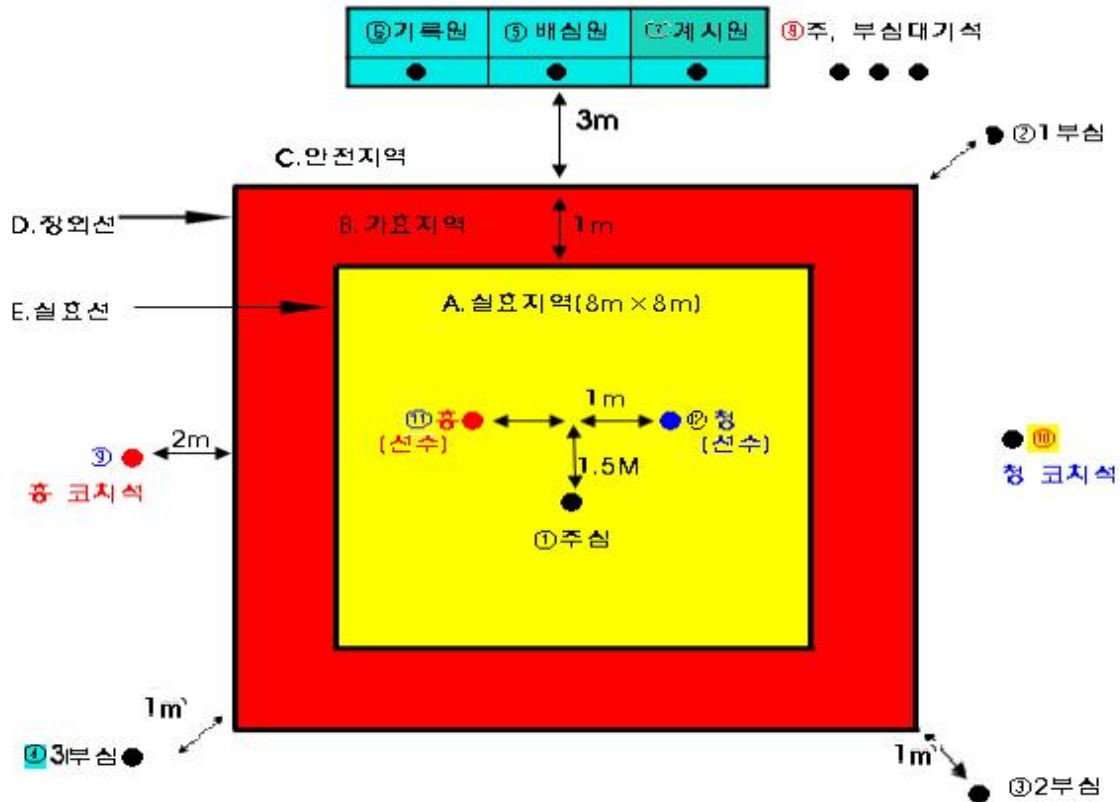
단, 지도자(코치)는 경기 중 지정된 의자에 앉아 일어설 수 없으며 선수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6) 검사대의 위치

경기장 입구 또는 경기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곳에 정하며 보호용구를 검사한다. 단, 대회장의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부심이 이를 대신할 수 도 있다.

(개정2016.5.07)

[그림-1] 대련 경기장



【해설】

경기지역은 실효지역과 가효지역을 포함한다. (A. 실효지역+B가효지역)

제4조 선 수

1. 선수

1) 자격

- (1) 단체 및 개인선수가 당해 연도 선수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사람
- (2) 협회에서 인정하는 단증을 소지한 사람
- (3) 협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선수자격을 갖춘 사람

2) 복장

- (1) 대회장에 출입하는 선수는 협회의 선수등록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2)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공인도복을 착용해야 한다.
- (3) <삭제 2020.01.11.>

(4) <삭제 2020.01.11.>

(5) <삭제 2020.01.11.>

3) 의무사항

- (1) 금지된 약물복용이 판명 될 경우 입상자는 등위가 박탈되며 차 하위자가 그 등위를 승계하고 당해 연도 선수자격을 취소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개정2016.5.07)
- (2) 심판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무단이탈 할 수 없다.
- (3) 지정된 보호 장비이외의 것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지 못한다.
- (4) 선수등록증 및 선수번호는 경기위원회가 지정할 경우 지정하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5) 경기순서 및 선수번호를 반드시 숙지하여 호명 즉시 경기준비를 완료하여 경기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 (6) 경기 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사고에 대해 상대선수와 협회 및 주최, 주관 단체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 또한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범한 선수 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설】

입상자가 취소되는 경우 차 하위자가 등위를 승계토록 한다.

제5조 임원 및 감독, 코치

1.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임원, 감독, 코치로 활동하려면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2020.01.11.)
 - 1) 임 원 : 전국경기위원회,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단체의 경기위원회 임원을 말하며 2급 이상의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개정2013.01.26.), (개정2020.01.11.)
 - 2) 감 독 :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소지자로 협회 등록도장인 준을 받고, **경기인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협회에 팀(도장) 등록을 인준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0.01.11.)

- 3) 코 치 :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도자) 3급 이상의 소지자로 협회 등록도장인
준을 받고, 경기인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협회에 팀(도장) 등록을
인준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0.01.11.)

2. 복장

- 1) 대회장에 출입하는 임원 및 감독, 코치는 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운영지도자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2020.01.11.)
- 2) 지도자는 심판과 동일한 복장을 할 수 없으며,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유지
할 수 있는 정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복장을 하여야 한다.
- 3) 지도자의 복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회장 출입을 할 수 없다.

3. 의무사항

- 1) 당해 연도 소정의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수료하여 경기운영지도자(경기지
도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경기규정을 숙지하고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
여야 한다. (개정2020.01.11.)
- 2)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소속팀 이외의 다른 팀을 지도할 수 없다.
- 4)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상대선수와 협회 및 주최·주관 단체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
- 5)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내에 출입할 수 없다.

제6조 보호 장비 및 경기용품

1. 보호 장비

- 1) 모든 보호 장비는 본 협회의 공인용품 심사를 통과한 공인등록업체의 제품
이어야 한다. (개정2016.5.07)
- 2) 선수는 지정된 보호 장비로 머리보호대, 몸통보호대, 팔·다리 보호대, 낭심
보호대, 마우스피스 착용해야 하며, 낭심보호대는 도복 안에 착용해야 하
며, 손·발등보호대는 경기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7.01.14), (개정2019.01.12)
- 3) 공인등록업체의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경기개시 전에 경기위원회의 보호 장
비 심사를 통과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 4) 개인보호 장비(팔·다리 보호대, 낭심보호대, 마우스피스)는 개인지참을 원칙으로 하며 필히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 실격 처리된다.
- 5) 개인보호 장비의 규격 및 품명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하 회원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6) 2017.10.14<삭제>

2. 경기용품

- 1) 모든 경기용품은 본 협회의 공인용품 심사를 통과한 공인등록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2016.5.07)
- 2)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경기에 사용되는 용품 및 보호 장비는 과학적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 3) 보호 장비 및 모든 경기용품 생산 납품업체는 본 협회의 공인용품 심사를 통과한 후 협회로부터 공인용품 지정업체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4) 지정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으며 실격 처리된다.

제7조 체 급

1. 부별 구분

- 1) 부별 구성은 남자부, 여자부 또는 청소년(중, 고등부 통합체급) 대상의 대회일 경우 청소년부로 구성한다.
- 2) 학제별로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한다. 단, 초등부를 초등1부(1~2학년), 초등2부(3~4학년), 초등3부(5~6학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학부와 일반부는 대학일반부로 체급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3) 부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초등1부(1~2학년), 초등2부(3~4학년), 초등3부(5~6학년)로 구분 할 수 있다. (2013.1.26개정)
 - (2) 중등부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3) 고등부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4) 대학부 :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5) 일반부 : 현20세 이상인 사람.
- (6) 대학일반부 : 대학부와 일반부를 통합하는 경우.
- (7) 청소년부 : 중등부와 고등부를 통합하는 경우.

2. 부별 체급

1) 부별체급 : 남, 여 총12부별 15체급 총 90체급

(1)남자부 : 6부별 9체급 총54체급(개정2017.01.14)

(단위:kg)

부 별 체급별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①핀 급	21이하	27이하	33이하	40이하	50이하	50이하
②플라이급	21.1~24	27.1~30	33.1~36	40.1~44	50.1~55	50.1~55
③밴 텀 급	24.1~27	30.1~33	36.1~39	44.1~48	55.1~60	55.1~60
④페 더 급	27.1~30	33.1~36	39.1~42	48.1~52	60.1~65	60.1~65
⑤라이트급	30.1~33	36.1~39	42.1~45	52.1~56	65.1~70	65.1~70
⑥웰 터 급	33.1~36	39.1~42	45.1~48	56.1~60	70.1~75	70.1~75
⑦미 들 급	36.1~39	42.1~45	48.1~51	60.1~64	75.1~80	75.1~80
⑧헤 비 급	39.1~42	45.1~48	51.1~54	64.1~68	80.1~85	80.1~85
⑨슈퍼헤비급	42.1이상	48.1이상	54.1이상	68.1이상	85.1이상	85.1이상

[표-1] 남 자 부 체 급 표

(2) 여자부 : 6부별 6체급 총36체급 (개정2013.1.26)

(단위:kg)

부 별 체급별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①플라이급	24이하	27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50이하
②밴텀급	24.1~29	27.1~32	30.1~35	40.1~45	50.1~55	50.1~55
③페더급	29.1~34	32.1~37	35.1~40	45.1~50	55.1~60	55.1~60
④라이트급	34.1~39	37.1~42	40.1~45	50.1~55	60.1~65	60.1~65
⑤미들급	39.1~44	42.1~47	45.1~50	55.1~60	65.1~70	65.1~70
⑥헤비급	44.1이상	47.1이상	50.1이상	60.1이상	70.1이상	70.1이상

[표-2] 여 자 부 체 급 표

2) 청소년부 : 2부별 10체급 총 20체급

(단위: kg)

체급별 부 별	남 자 부	여 자 부
①핀 급	45kg 이하	42kg 이하
②플 라 이 급	45.1 ~ 48kg	42.1 ~ 44kg
③밴 텀 급	48.1 ~ 51kg	44.1 ~ 46kg
④페 더 급	51.1 ~ 55kg	46.1 ~ 49kg
⑤라 이 트 급	55.1 ~ 59kg	49.1 ~ 52kg
⑥웰 터 급	59.1 ~ 63kg	52.1 ~ 55kg
⑦라이트미들급	63.1 ~ 68kg	55.1 ~ 59kg
⑧미 들 급	68.1 ~ 73kg	59.1 ~ 63kg
⑨라이트헤비급	73.1 ~ 78kg	63.1 ~ 68kg
⑩헤 비 급	78.1 ~ 83kg	68.1 ~ 73kg

[표-3] 청소년부 체급표

【해설】

- ① 체급표에서 사용되는 “이하”란 -kg의 뜻으로 그 수를 포함하며 단위는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초등1부의 핀급에서 24kg이하는 24kg까지이며 24.1kg이상은 초과로 실격처리 된다.
- ② 체급표에서 사용되는 “이상”이란 +kg의 뜻으로 그 수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남자 초등1부 슈퍼헤비급에서 45.1kg이상은 45.1kg 이상의 kg을 뜻하며 45kg까지는 미달이며 실격 처리된다.

제8조 경기 종류 및 방식

1. 경기 종류

1) 개인전

- (1) 각 체급별 개인 간의 대전방식이며 차상위 체급과 2체급 통합전 또는 전 체급 통합전을 할 수도 있다.
- (2) 개인전은 4명 이상 참가하여야 하며 4명 미만 일 경우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 체급의 경기는 취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회요강을 통하여 사전에 출전단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2명 미만의 출전경기는 취소한다.(개정2017.01.14)

2) 단체전

(1) 단체전 선수는 정선수와 후보 2명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결원이 발생 할 경우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출전 할 수 있다.

(2) 대회의 성격에 따라 경기위원회에서 남자부, 여자부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를 할 수 있다.

- ① 통합체급 단체전
- ② 부별 대표체급 단체전,
- ③ 학제별 단체전

(3) 인원구성은 5인제, 9인제로 한다.

(4) 대전순서는 경기 전 배심원의 진행에 따라 각 팀 지도자의 추천으로 우선 권을 받은 지도자가 신청 할 수 있으며 대전순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단체전의 부별 체급표는 다음과 같다.

- ① 통합체급 단체전(5인제)

대전번호	남자부	여자부
1	30.1 ~ 40kg	30.1 ~ 40kg
2	40.1 ~ 50kg	40.1 ~ 50kg
3	50.1 ~ 60kg	50.1 ~ 60kg
4	60.1 ~ 70kg	60.1 ~ 70kg
5	70.1 ~ 80kg	70.1 ~ 80kg

[표-4] 통합체급 단체전(5인제) 체급표

② 부별 대표체급 단체전(5인제)

부 별	남자부	여자부
①초등2부	대표 체급	대표 체급
②초등3부	대표 체급	대표 체급
③중등부	대표 체급	대표 체급
④고등부	대표 체급	대표 체급
⑤대학일반부	대표 체급	대표 체급

[표-5] 부별 대표체급 단체전(5인제) 체급표

【해설】

각 부별의 체급 상하위 2개 체급을 통합하여 각 부별 대표체급으로 경기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학제별 단체전 (9인제, 5인제)

남녀 각 학제별 부별(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전 체급별 9인제, 5인제 등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단, 5인제일 경우 체급구분을 경기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별	초등1부	초등2부	초등3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
①핀 급	①	①	①	①	①	①
②플라이급	②	②	②	②	②	②
③밴 텀 급	③	③	③	③	③	③
④페 더 급	④	④	④	④	④	④
⑤라이트급	⑤	⑤	⑤	⑤	⑤	⑤
⑥웰 터 급	⑥	⑥	⑥	⑥	⑥	⑥
⑦미 들 급	⑦	⑦	⑦	⑦	⑦	⑦
⑧헤 비 급	⑧	⑧	⑧	⑧	⑧	⑧
⑨슈퍼헤비급	⑨	⑨	⑨	⑨	⑨	⑨

[표-6] 학제별 단체전 9인제의 경우

2. 경기방식

- 1) 개인 토너먼트전(Single Elimination Tournament)
- 2) 리그전(Round Robin)

제9조 경기시간

1. 모든 경기는 각 회전 당 1분30초 2회전으로 하며 회전간의 휴식시간 1분으로 한다.
2. 회전의 수는 대회 성격에 따라 경기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3. 1항의 회전 당 경기시간은 경기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득점과 감점이 동점인 상태에서 종료 시에는 선득점제(서든데스 오버타임)로 1분30초 2회전일 경우 1분30초 1회전을, 2분1회전일 경우 1분1회전으로 진행한다. (개정2016.5.07)
단, 추가 된 회전에서도 동점일 경우에는 우세판정으로 승·패를 가린다.
(개정2016.5.07), (개정2018.01.13)
5. 주심의 “갈려”, “중지” 선언 시 반드시 경기 중지 상태로 전환하여 경기 시간을 선수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개정2016.5.07)
단, 당일경기일정을 고려하여 경기위원회의 승인으로 “갈려” 동작의 경기 시간을 중지하지 않고 진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 전 출전선수단에게 방송을 통한 사전공지를 해야 한다. (개정2016.5.07)

【해설】

- ① 선수는 회전 간의 휴식시간에 코치석에 설치된 의자에 앉거나 지정된 위치에서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하며, 선수는 절대 경기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추 첨

1.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전산방식의 추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산방식의 추첨일 경우에는 협회에서 공인한 경기전산화시스템(HTS)의 대진

표생성 프로그램으로 한다.

3. 전산방식의 추첨이 어려울 경우 경기개시일 이전에 경기위원회 임원과 참가팀 대표의 참석 하에 추첨한다. 추첨순위는 참가팀명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4. 불참한 팀에 대해서는 추첨임원이 대행할 수 있다.
5.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첨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6. 대회개최 7일전에 추첨이 완료되어 대진표생성이 되어야 한다.
7. 대회개최 5일전에 협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대진표를 공개하며 2일 이상의 수정기간을 주어야 한다.
8. 수정기간에는 선수명, 소속단체명의 기재 오류에 대한 수정만 가능하다.
단, 본 협회가 인정하는 대진표작성법과 다르게 생성된 대진일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제11조 계 체

1. 출전 선수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계체를 받아야 한다.
2. 계체는 경기 전일 또는 경기 당일에 1회 실시한다. 계체를 통과하지 못한 선수는 계체시간 내에 1회 재 계체할 수 있으나 계체시간이 완료되면 출전자격을 상실한다.
3. 계체에 임하는 선수는 선수등록증을 계체위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4. 선수가 제시한 선수등록증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개정2016.5.07)
5. 계체 시 남자는 상·하의 지정된 공인도복을 착용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상의만 탈의할 수 있다. 여자는 상의 반팔셔츠와 하의는 지정된 공인도복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한다. (개정2018.01.13)
6. 계체는 +, - 오차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2013.01.26)
7. 계체에 사용되는 체중계는 경기위원회에서 인정한 장비로 해야 한다.
8. 계체위원은 경기위원장이 계체일정 전일까지 경기위원과 심판위원 중에 4명이 상을 선임한다.
9. 1차 계체시 +, - 1,5kg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추가 계체 없이 실격 처리한다. (개정2016.5.07)
10. 계체위원의 부정이 확인될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다. (개정2018.03.25)

제12조 경기진행

1. 선수 호출

- 1) 선수는 사전에 공지한 경기번호 및 경기배정시간표에 따라 출전 준비를 하여야하며 경기시간 30분전에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선수대기석에서 선수확인이 안될 경우 1회 안내방송을 하며 경기개시 시간까지 출전하지 않는 선수는 대전포기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 한다.

2. 신체 및 복장점검

- 1) 호출된 선수는 진행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에서 검사원로부터 선수의 건강상태를 비롯한 신체 및 보호 장비의 검사를 받는다.
- 2) 검사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 전에 부심이 대신한다.
- 3) 복장 및 보호 장비가 협회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된다.

3. 선수대기

- 1) 검사를 마친 선수는 배심원의 호출에 따라 선수등록증과 대진표를 확인한 후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한다.

4. 선수입장

- 1) 검사를 마친 선수는 경기장으로 입장한다.
- 2) 장외선 밖에서 대기하다가 주심의 “출전” 명령어와 수신호가 있으면 선수는 경기장 중앙을 향해 입례하고 자신의 위치로 입장한다.

5. 경기 시작과 종료

- 1) 주심의 선언에 의해 경기가 시작되고 종료된다.
- 2) 주심의 경기시간 운영을 계시원이 보조한다.

6. 경기진행 절차

- 1) 호출 된 선수는 선수대기석에서 대기한다.
- 2) 부심은 검사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장외선 밖에서 선수의 복장상태 및 보호 장비의 착용 그리고 선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3) 주심이 “청(주심의 오른손), 홍(주심의 왼손) 출전” 선수는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기 전에 차렷 자세로 서서 45도로 허리와 머리를 숙여 입례 후 선수위치로 가서 배심원석을 보고 선다. (개정2018.03.25)

- 4) 주심은 “앞에 보고”, “차렷”, “경례”, “바로” 구령에 따라 배심원석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게 한 후, “마주보고”, “차렷”, “경례”, “바로” 선수간의 예의를 갖추게 한다.
 - 5) 주심의 “맞대기” 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는 오른발을 나오게 한 상태에서 오른 손목을 맞대는 맞대기 자세를 취한다.
 - 6) 주심의 “준비” 라는 구령과 함께 선수는 오른발이 뒤로 빠지며 기합과 함께 준비 자세를 취한다.
 - 7) 주심의 “시작” 이란 구령으로 경기는 시작이 된다.
 - 8) 경기가 끝나면 주심은 “마주보고”, “차렷”, “경례”, “바로” “앞에 보고”, “차렷”, “경례”, “바로” 선수를 서로 배심석을 보게 한 후 예의를 갖추게 하고 판정을 기다리게 한다. (개정2013.01.26)
단, 동점인 경우에는 승자판정을 위해 선수를 배심원석을 향해 정좌하게 한다.
 - 9) 승자 선언은 주심이 승자 쪽을 향해 손을 들어 선언한다.
 - 10) 주심은 승자선언 후 서로 악수를 하게하고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퇴장하기 전에 장외선 안에서 경기장 중앙을 향해 차렷 자세로 서서 45도로 허리와 머리를 숙여 입례한 후 퇴장한다.
7. 단체전 절차
- 1) 양 단체의 선수는 제출된 명단 순으로 경기장에 입장하여 지정된 곳에 일렬 종대로 서서 경기장을 중앙을 보고 선다.
 - 2) 주심의 지시에 따라 예의를 갖춘 후 첫 번째 선수만 대기하고 나머지 선수는 대기석에서 순서를 기다린다.
 - 3) 경기진행은 대전순서에 따라 5항의 절차에 따른다. 대전순서는 변경할 수 없다.
 - 4) 경기 종료 후 양 단체의 선수는 경기장에 입장하여 마주보고 선다.
 - 5) 승자선언은 승자 쪽을 향해 손을 들어 선언한다.
 - 6) 승자선언 후 6항10)에 따라 퇴장한다.

제13조 허용기술 및 허용부위

1. 허용기술

- 1) 손 기 술 : 손으로 던지기, 꺾기
- 2) 발 기 술 : 발 또는 다리를 이용한 차기, 걸기, 던지기
- 3) 허리기술 : 손으로 잡았거나 발로 상대를 걸었을 때 허리를 이용하여 상대를 던지거나 밀어치는 기술

2. 허용부위

- 1) 얼굴부위 : 뒤통수와 경추를 제외한 얼굴부위 전체를 말하며 발기술에 의한 공격만 허용된다.
- 2) 몸통부위 : 몸통보호대로 보호된 부위로 손기술과 발기술을 말하며 척추와 등 부위는 공격할 수 없다.
- 3) 팔 부 위 : 손목부터 어깨관절까지 이며 합기도 술기의 꺾기술이 가능하다. 단,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4) 다리부위

- (1) 발목에서 골반 아래 허벅지까지의 부위를 말한다.
- (2) 허용기술은 하단찍어차기와 하단뒤돌려차기로 제한한다.
- (3) 방죽술의 경우에는 다리부위 전체가 허용된다.
- (4) 하단찍어차기는 발목에서 골반아래의 허벅지까지 허용된다. 단,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 (5) 하단뒤돌려차기는 발목위에서 무릎아래까지 허용된다.

3. 승인이 필요한 허용 부위 및 기술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하여야만 허용되는 부위 및 기술은 다음과 같다.

- 1) 하단찍어차기: 발목에서 골반 아래의 허벅지 부위
- 2) 꺾기술 : 두 선수가 서 있는 상태에서만 허용된다.

제14조 득점기술

1. 차기(타격)

- 1) 발차기는 뒤통수, 등(척추부위), 낭심, 금지된 공격부위를 제외한 부위의 공격이 가능하다.
- 2) 보호 장비에 의해 보호된 득점유효부위(얼굴, 몸통)와 하단 뒤돌려차기의

공격만을 득점으로 인정한다. 단, 하단찍어차기는 경기위원회에서 승인 하에 허용할 수 있다.

- 3) 득점은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 4) 공격자의 발이 경기지역(실효지역과 가효지역)에 위치하여야 득점으로 인정한다. 이때 방어자가 장외선을 벗어난 상태라도 득점으로 인정된다.
- 5) 공격자의 발이 경기장에 일부분이라도 닿고 있거나 공격자가 공중에 뜬 상태에서 신체의 1/2이상 경기장에 있을 때 그 공격은 유효하다.
- 6) 밀어차기는 상단공격만 유효하다. (개정2016.5.07)

2. 꺾기

- 1) 합기도 술기에 의한 꺾기 시 득점으로 인정된다.
- 2) 손가락을 꺾거나 목을 조르거나 꺾는 행위는 절대 할 수 없다.
- 3) 상대방의 보호 장비를 잡거나 보호 장비를 이용하여 꺾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4)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한 득점기술만 허용된다.

3. 던지기

- 1) 방죽술을 포함하며 손으로 잡거나 발로 걸어서 상대방의 한발 또는 두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로 넘어지게 하는 공격
- 2) 도복을 잡은 상태에서 목 감아 던지기는 허용되지만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목을 감아 던지거나, 두 팔로 목을 조르거나 던질 수는 없다.

제15조 점수 및 채점

1. 점수

모든 경기의 점수는 1점과 2점으로 한다.

2. 채점

- 1) 선수의 득점 시 부심은 즉시 득점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2016.5.07)
- 2) 부심에 의해 득점, 주심에 의해 감점이 표시되면 배심원이 점수를 인정하고 채점표에 기록하며 배심원과 기록원은 전광판에 점수표기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전자장비가 아닐 경우 기록원은 배심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채점판으로 득점, 감점을 표시한다. (개정2016.5.07)
- 3) 득점은 부심(3명)중 2인 이상이 같은 득점을 표시한 것을 유효득점으로 채

점한다.

- 4) 부심의 1점, 2점의 판정이 다를 경우 배심원이 주, 부심을 소집하여 조정
한 후 주심이 판정결과를 선언한다. (개정2017.01.14)

【해설】

예를 들면, 부심1명은 2득점 선언, 부심1명은 1득점 표시, 부심1명은 무득점으로 판
정 하였을 경우에 배심은 부심을 소집하여 조정할 수 있다.

- 5) 배심원은 주심과 부심의 판정이 정확하지 못했거나 경기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주심과 부심을 소집하여 이를 협의 조
정 할 수 있다.

3. 동시에 이루어진 기술

- ① 동시에 이루어진 기술은 모두 득점으로 인정한다.

단, 선득점제(서든데스 오버타임)경기는 먼저 인정 된 득점을 인정한다.
(개정2014.02.15)

- ② 전자장비 사용 시 경기종료시간의 동시 득점은 부심용 전자기기를 활용하
여 전광판에 표기 된 점수 만 인정한다.

전자장비 사용에서 경기시간 종료시간 동시득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2016.5.07.)

【해설】

예를 들면 청이 타격으로 득점하고 동시에 홍이 던지기로 득점을 한 경우 청·홍 모두
득점으로 인정한다.

단, 선득점제(서든데스 오버타임)경기라면 청의 타격 득점을 선득점으로 인정한다.

제16조 종합집계

1. 개인전은 각 체급당 4명, 단체전은 4팀이 출전하여야만 점수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전인원 제한 없이 4명 또는 4팀 이하인 체급도 종합 점수집계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회개최계획(안)을 통하여 사전에 출전단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경
우에만 적용된다.
3. 개인전 단체별 종합점수 집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1위(금메달) 하나는 2위(은메달) 보다 우선이며 2위(은메달)하나는 3위(동메달)보다 우선한다.
- 2) 순위(메달)가 동수일 경우에는 출전체급의 인원수가 많은 수상성적을 우선한다.
- 3) 미 계체 및 계체의 실격인 경우 참가팀 구성 및 전체 참가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 4) 위 사항이 동일 할 경우 8강, 16강 다수 진출 팀 순으로 한다.

제17조 득점의 유형

1.득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8.01.13)

점수	기술구분	내 용
1점	차기	① 몸통 공격을 정확하게 공격한 경우 ② 하단 찍어차기 공격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한 경우 단,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벌칙에 의한 득점	① 상대방이 경고 누적 2회인 경우 ② 상대방이 감점 1회를 받은 경우
	추가득점	① 상대의 공격으로 호흡장애 또는 중심을 잃거나 넘어졌을 경우에 즉시 대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심이 계수(카운트)를 할 경우 공격자의 해당 득점에 1점을 추가한다. 【해설】 계수(카운트) : 주심은 선수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며, 재대결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여덟까지 세고 추가득점을 선언한 후 경기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2점	차기	① 얼굴(머리보호대 포함)을 정확하게 공격한 경우 ② 하단 뒤돌려차기로 상대가 한발이나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져 중심을 잃고 넘어져 신체의 일부가 바닥에 닿게 한 경우(전, 측, 후면 모두 포함)
	던지기	① 방죽술을 포함한 상대의 한쪽 발이나 두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정확한 던지기 기술로 넘어지게 한 경우 (손기술, 발기술, 허리기술, 방죽술), (전, 측, 후면 모두 포함)
	찍기	① 팔 부위(손목, 팔꿈치, 어깨)만 유효하다. ② 정확하게 찍어 제압된 상태로 주심이 "찍기" 선언을 한 경우 ③ 주심은 정확한 술기라고 판단 될 때 제압된 시간과 상관없이 "찍기" 선언을 해야 한다. 단, 찍기술은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에만 허용 된다.

[표-7] 득점의 유형

제18조 금지행위와 벌칙

1.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의 선언은 주심이 한다.
2. 벌칙은 경고, 감점, 퇴장으로 구분한다.
3. 경고 2회는 감점 1점으로 한다. (개정2018.01.13)
4. 경고 1회는 동점 시 우세승에 영향을 미친다.
5. 감점1점과 누적된 경고가 2회인 경우 자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득점1점을 부여 해주며, 이 경우 감점과 경고의 누적횟수는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며, 감점과 경고를 추가로 받아 경고 누적횟수가 3회에 해당 할 경우 반칙패로 처리한다. (개정2018.01.13)
6. 감점행위 2회시에도 반칙패로 처리한다. (개정2015.02.14.)

제18조 1 경고사항 (개정2019.01.12)

- 1) 경기 중에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행위
- 2) 경기를 지연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하단뒤돌려차기를 차는 행위
- 3) 하단뒤돌려차기를 무릎이상으로 차는 경우 (개정2016.05.07)
- 4) 하단뒤돌려차기를 차는 동작과 찬 후 불안정한 자세로 엉덩이나 허벅지가 지면에 닿는 경우 (개정2018.01.13)
- 5) 몸을 아래로 숙이는 행위
- 6)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위
- 7) 목을 조르는 행위
- 8) 자신이 득점 표시를 하며 소리 지르며 시위하는 행위
- 9) 엄살을 부리는 행위
- 10) 고의로 경기지역을 벗어나는 행위
- 11) 보호장비를 잡고 차거나 던지기를 하는 행위(개정2013.01.26)
- 12) 뒤돌려차기, 하단뒤돌려차기 등의 발차기공격을 하면서 고의로 넘어지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행위 (개정2018.01.13)
- 13) 주심의 갈려, 중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14) 밀어차기로 복부를 공격할 시 (개정2016.05.07)

- 15) 무릎이나 등의 신체의 일부분이 지면에 다면서 던지기를 하는 경우
(개정2016.05.07)
- 16) 주먹으로 몸통을 가격하는 행위 (개정2018.03.25)
- 17) 보호 장비 이외의 악세사리를 착용한 경우 (개정2018.03.25)
- 18) 등 뒤에서 상대방을 양팔로 안아 던지는 경우 (개정2018.03.25)
- 19) 상대방을 조롱하는 행위 (개정2018.03.25)
- 20) 비신사적인 모든 행위 (개정2018.03.25)

제18조 2 감점사항 (개정2019.01.12)

- 1)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2) 발을 잡힌 상태에서 발로 점프하여 앞찍어차기와 뒤돌려차기등의 공격을 하는 행위 (개정2016.5.07)
- 3) 뒤통수 또는 등(척추) 부위를 고의로 가격하는 행위
- 4) 머리로 박치기하는 행위
- 5) 팔꿈치나 무릎으로 가격하는 행위
- 6) 손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 7) 상대방의 낭심을 무릎, 발,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
- 8)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깨무는 행위
- 9) 경기위원회에서 대회에 허용하지 않은 부위나 기술을 하는 행위
(1) 하단 찍어차기 (2) 꺾기술
- 10) 선수나 지도자 또는 관중석에서 경기를 방해하는 올바르지 않은 행위
(개정 2018.01.13)

제18조 3 퇴장 (개정2019.01.12)

- 1) 선수가 경기도중 심판판정에 불복하여 심한 욕설 및 난동을 부리는 행위
- 2) 지도자가 경기위원회의 허가 없이 경기장에 난입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3) 선수와 지도자가 주심의 퇴장명령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제19조 판정의 유형

1. 한판승

- 1) 하단뒤돌려차기의 공격만 허용된다.
- 2) 상대의 양발 모두 지면에서 높이 떨어져 완전히 중심을 잃고 신체의 상체와 하체부분이 모두 바닥에 닿았을 경우에 주심이 “한판”을 선언한다.
- 3) 한판승은 대회전에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설】

- ① 타이밍과 기술이 완벽하고 상대의 두발이 완전히 공중으로 뿔다가 넘어지면서 상체와 하체가 모두 바닥에 닿은 경우
- ② 주심은 한판승의 기술이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한판승을 선언해야한다.

2. 제압승

- 1) 꺾기기술만 허용된다.
- 2) 정확한 기술로 제압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주심은 “꺾기”를 선언한다.
- 3) 제압승은 대회 사전에 경기위원회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해설】

- ① 꺾기기술의 허용 시에는 2점 득점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제압승으로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대회전에 알려야 한다.

3. K0승(Knock Out)

- 1) 정당한 공격에 의해 넘어진 선수가 카운트 열을 셀 때까지 회복을 못하여 계속할 의사를 밝히지 못하였을 때
- 2) 정당한 공격에 의해 넘어진 선수가 주심의 판단으로 경기가 어려울 때 주심은 카운트 없이 K0승을 선언한다.

4. 주심에 의한 기권승(RSC승)

- 1) 주심의 판단이나 의사의 자문에 의하여 경기속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 2) 계시 후에도 경기속행이 안되거나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선언한다.

5. 판정승

- 1) 득점과 감점에 따라 총점이 많은 선수가 승자가 된다.
- 2) 총점이 같을 경우에는 득점이 많은 선수가 승자가 된다.
- 3) 득점과 감점이 같을 경우에는 선득점제(서든데스 오버타임)로 1분30초 2회전을 경우 1분30초를 2분1회전일 경우 1분1회전으로 진행하며 먼저 득점한 선수가 승자가 된다.
단, 경기시간은 경기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 4) 득점과 감점이 같고 한쪽이 경고가 있을 경우 경고가 있는 선수가 패자가 된다.
- 5) 판정할 시에는 제20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03.25)

6. 우세승

- 1) 경기종료 후 동점이거나 선득점제(서든데스 오버타임)로도 동점일 경우 우세판정으로 결정한다.
- 2) 우세판정의 기준은 제20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8.03.25)

7. 기권승(RSC승)

상대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였을 경우에 기권승을 선언한다.

8. 실격승

상대 선수가 선수의 자격을 상실 하였거나 결격사유가 인정 될 경우 또는 체에 실격 되었을 경우 실격승을 선언한다.

9. 반칙승

- 1) 상대선수가 감점, 경고 선언으로 감점이 2점일 경우와 경고3회일 경우는 반칙패로 반칙승이 된다. (개정2016.5.07)
- 2) 상대방의 선수 및 지도자가 고의적으로 규정을 무시 또는 부정하고, 심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반칙승을 선언할 수 있다.
(개정 2018.01.13)

10. 합의판정 (개정2017.01.14)

부심의 득점표기와 관련하여 각 부심의 득점표기가 다른 경우와 전광판의 득점 오류 표기 시는 다음과 같다.

- 1) 배심은 즉시 주심에게 경기중지를 지시한 후 주심과 부심을 배심석 앞으로 소집한다.
- 2) 배심은 득점을 표기한 부심의 득점표기 의사를 확인한다.
- 3) 득점을 표기한 부심의 의사와 판정이 상이할 경우 주심의 의사를 확인한다.
- 4) 배심은 합의판정이 결정 된 이후 주심에게 합의판정 내용선언을 지시한다.
- 5) 주심은 배심의 합의판정 내용을 지시할 경우 즉시 선언해야 한다.
- 6) 배심은 합의판정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20조 우세판정

1) 우세판정의 기준

- ① 경기를 주도한 경우
- ② 선제공격이 많은 경우
- ③ 기술적인 공격이 많은 경우

2) 추가된 선득점제(서든데스 오버타임)까지의 경기종료 후에도 동점 일 경우는 우세판정으로 승패를 가리며, 우세판정을 할 경우 주심과 부심은 각자의 지정된 위치에서 배심석을 바라보고 주심의 ‘판정’ 이란 구호에 따라 3부심은 즉시 전자기기나 깃발을 이용하여 우세판정을 해야 한다.

단, 깃발을 사용하여 우세판정을 할 경우 1부심과 3부심은 2부심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여 우세한 선수에 해당하는 깃발을 들어 올려 판정을 한다.

(개정2018.01.13)

제2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1. 경기에 관한 사태는 해당 경기의 배심원과 심판원의 협의로 처리한다.
2. 경기외의 사태는 경기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경기위원회의 협의에 의한 처리는 효율성과 공정성에 입각하여 단, 한사람의 불이익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소 청

소청에 관한 사항은 소청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3조 심의조정

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경기의 모든 상황에 따라 경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경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조정 할 수 있다.

제24조(규정 예외 적용)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련 경기의 경기구분, 경기방법 등을 협회에서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회장의 승인으로 확정 된다.

- ① 국가 재난상황
- ②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③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 ④ 국가 재난에 준하는 기타사항

[본조 신설 2020.01.11.]

부 칙 (1999.03.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0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0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10.)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1.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1.2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2.1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2.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5.0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1.14.)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1.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12.)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1.1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